

대구지방법원 2021. 10. 13 선고 2020가단14144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환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라

담당변호사 여인협

변 론 종 결 2021. 8. 18.

판 결 선 고 2021. 10. 13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와 C 사이에 경북 의성군 D 전 2,655㎡ 및 E 전 1,458㎡에 관하여 2019. 8. 7.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C에게 위 토지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. 8. 8. 접수 제137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발생

1) 원고는 2019. 9. 5. 주식회사 F(이하 'F'이라고만 한다)과 한우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, 그 무렵 C은 원고에 대하여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연대보증하였다.

2) 원고는 2019. 9. 7.부터 2019. 11. 22.까지 F에 한우목심 등을 납품하였으나 위 회사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, 이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19차343호로 F 및 C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.

3) 위 법원은 2019. 12. 16. 'F과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2,843,986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'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,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나. C의 재산 처분 등

C은 2019. 7. 9. 경북 의성군 D 전 2,655㎡ 및 E 전 1,458㎡(이하 '이 사건 각 토지'라 한다)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9. 8. 8.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9. 8. 7. 매매예약(이하 '이 사건 매매예약'이라 한다)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(이하 '이 사건 가등기'라 한다)를 마쳐주었다.

다.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경매개시 등

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20. 2. 7. 이 법원 G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.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3호증, 을 제1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 요지

C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는바,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, 이 사건 매매예약은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다만,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,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(대법원 1999. 4. 27. 선고 98다56690 판결 등 참조).

살피건대, 원고는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,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채권은 원고가 2019. 9. 5. F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물품을 공급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인 2019. 8. 7.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,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그 무렵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박가람